| 의안 번호 | 1966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8. 9.(화) 박경흠 의원 외 4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8. 9.(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8. 10.(수)

## 2. 제안설명 요지(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2. 8. 1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 정비(안 제3조제2항제2호)

◦ 신설 기구 상임위원회 지정(정책사업단→행정자치위원회)

##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2

##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2022. 8. 1일자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정책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의2(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식 · 기술 · 서비스기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 지원, 상업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기반 기업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약사항 중 주요 역점사업 등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인구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8.1.]